



## 1. 消防法 改正

消防法이 1983年 12月 30日, 法律 第3675號로 改正 公布되었다.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토록 附則에 서 정하고 있는데 그 主된 改正內容을 살펴보면, 消防救急業務 와 請願消防制, 消防施設의 委託點檢制 條項이 新設되었고, 그 外에는 消防設備 工事業制度 改善, 消防用機器 販賣業 申告制 廢止 등을 들 수 있다.

本號에서는 全文中 改正된 部分만을 看기로 한다.

### 消防法中改正法律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4號를 削除한다.

1. “消防對象物”이라 함은 山林・船舶(船舶安全法 第2條第1項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 하는 船舶과 港内에 繫留된 船舶에 한한다)・船渠・車輛・建築物 기타의 工作物 또는 物件 을 말한다.

第3條의 題目“(市・郡의 責任等)”을 “(消防業務에 대한 責任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釜山市”를 “直轄市”로 하며, 同條第2項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第4條第1項중 “다음 각號에 게기하는 命令”을 “다음 각號의 命令”으로 한다.

第7條但書를 削除한다.

第9條第4項중 “第32條第3項”을 “第42條의 10第3項”으로 한다.

第12條第1項但書를 削除한다.

第1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 2 (防炎性能의 檢查) ①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炎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物品에 대하여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防炎性能検査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炎性能検査에 관하여는 第38條第2項・第5項과 第40條第2項・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炎性能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4條第1項중 “危險物의 貯藏所(車輛에 固定된 탱크에 貯藏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貯藏하거나 危險物의 製造所・貯藏所 또는 取扱所(이하 “製造所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取扱하여야 한다.”를 “危險物의 製造所 또는 取扱所(製造・貯藏 및 運搬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製造所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貯藏 또는 取扱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14條第2項중 “同一貯藏所”를 “同一貯藏施設”로하고, “貯藏所”를 “貯藏施設”로 하며, 同條第3項중 “大統領令이”를 “内務部令이”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第19條第1項중 “保安業務”를 “安全業務”로 한다.

第20條第1項但書를 削除한다.

**第 21 條의 題目 및 第 1 項중 “自衛消防組織”을 각각 “自體消防組織”으로 한다.**

**第 24 條중 “大統領令”을 “內務部令”으로 한다.**

**第 4 章의 題目 “消防施設”을 “消防施設 및 消防用機械・器具등”으로 한다.**

**第 29 條에 第 3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特殊場所의 關係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消防對象物에 設置한 消防施設에 관하여 内務部長官의 指定을 받은 者로부터 定期的으로 點檢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點檢을 받은 關係者는 그 결과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29 條의 2 중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을 “消防施設(消火器具・**

**・非常警報設備・自動火災速報設備・誘導燈・誘導標識 및 避難設備를 제외한다)”로 한다.**

**第 30 條 내지 第 33 條을 削除한다.**

**第 35 條(休業申告등) 第 34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用機械・器具등의 製造所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止・再開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内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 37 條第 1 項本文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消防用機械・器具등의 製造業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内務部長官은 6月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第 37 條第 1 項第 1 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 3 號但書를 削除한다.**

1. 第 34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違反한 때

**第 39 條第 2 號를 削除한다.**

**第 40 條第 1 項중 “또는 道知事는”을 “(第 70 條의 11 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은”으로, “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販賣業의 申告를 한 者”를 “製造業의 訸可를 받은 者”로, 資料提出을 命하며”를 “資料提出 기타 필요한 事項을 命하며”로 한다.**

**第 41 條의 題目 “(消防用水利施設)”을 “(消防用水施設)”로 하고, 同條第 1 項 및 第 2 項중 “水利施設”을 “消防用水施設”로 한다.**

**第 42 條의 題目 “(消防用水利施設의 指定)”을 (消防用水施設의 指定)”으로, 同條第 1 項중 “供 할 수 있는 水利를”을 “供할 수 있는 消防用水를”로, “消防用水利施設로”를 “消防用水施設로”로 하며, 同條第 2 項중 “消防用水利施設”을 “消防用水施設”로 한다.**

**第 42 條 다음에 第 4 章의 2 (第 42 條의 2 내지 第 42 條의 15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第 4 章의 2 消防設備工事業 등**

##### **第 1 節 消防設備工事業**

**第 42 條의 2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 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 (이하 “消防設備工事業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종류별로 内務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第 12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防炎性能이 있어야 할 物品에 대한 防炎處理業

2. 第 16 條第 1 項 및 第 29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의 工事業(이하 “消防施設工事業”이라 한다).

3. 第 16 條第 1 項 및 第 29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의 整備業

②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는 2年마다 1回 實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③ 内務部長官은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를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그 免許의 종류와 申請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는 3年마다 이를 更新하며, 更新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許의 效力은 壞失된다.

⑤ 内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⑥ 消防設備工事業의 종류와 그 종류별 營業의 범위, 免許 및 그 更新등에 관하여 필수한 事項은 内務部令으로 정한다.

**第42條의 3 (變更申告등)** 第42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者는 免許 받은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 또는 營業을 休止·再開·廢止한 때에는 内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2條의 4 (免許의 基準)** 第42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資本金 (個人인 경우에는 財產을 말한다) ·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42條의 5 (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2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을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禁治產 또는 限定治產의宣告를 받은 者

2. 禁錮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期間중에 있는 者

4.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5. 第42條의 6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42條의 6 (免許의 取消·營業停止)** ① 内務部長官은 消防設備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2條의 4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基準에 未達하게 된 경우

2. 第42條의 5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3. 詐偽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免許 또는 免許에 更新을 받은 경우

4.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5. 免許를 받은 후 정당한 事由없이 1년이 경과될 때까지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경우

6.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경우

② 消防施設工事業者가 第1項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에는 内務部長官은 6月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第42條의 7 (消防施設工事의 都給의 제한)** ① 消防施設工事業者는 그가 都給받을 수 있는 工事의 限度額 (이하 “都給限度額”이라 한다) 을 초과하여 消防施設의 工事を 都給받을 수 없다. 다만, 工事着手 후에 設計變更·物價變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工事費가 增加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都給限度額은 당해 消防施設工事業者の 資本金·工事實績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内務部長官이 2年마다 이를 정한다.

**第42條의 8 (下都給의 제한등)** ① 消防施設工事業者는 그가 都給받은 消防施設工事を 第3者에게 下都給할 수 없다. 다만, 당해 消防施設工事의 一部를 다른 消防施設工事者에게 1次에 한하여 下都給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② 消防施設工事業者는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施設工事의 一部를 下都給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消防施設工事의 都給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消防施設工事의 都給人은 下都給을 받는 者가 당해 消防施設工事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給을 받은 消防施設工事業者에게 下受給人의 變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消防施設工事業者が 정당한 事由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消防施設工事에 중대한 影響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消防施設工事의 都給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42條의 9 (免許가 取所된 경우등의 繼續工事)** ① 消防設備工事業者는 그 免許의 取消 또는 營業의 停止處分을 받거나 免許의 更新을 받지 못하여 그 免許의 效力이喪失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消防設備工事의 都給人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消防設備工事의 都給人은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都給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給契約이 解止되지 아니한 경우 그 消防設備工事業者는 이미 着手한 消防設備工事를 계속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設備工事를 계속하는 者는 그 工事를 完成할 때까지는 당해 工事에 관하여는 이 法에 의한 消防設備工事業者로 본다.

**第42條의 10 (施工申告 및 完工検査)** ① 消防設備工事業者가 消防設備工事 (防炎先處理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를 하고자 할 때에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工事의 内容・施工場所 기타 필요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消防設備工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検査 결과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적합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 第2節 消防設備技士

**第42條의 11 (消防施設工事의 施工管理)** ① 消防設備工事 (防炎處理業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士 (消防設備技術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下에 施工管理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設備技士의 責任下에 施工management하여야 할 消防設備工事의 종류 및 범위는 그 資格區分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의 12 (消防設備技士의 申告)** ① 第42條의 11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設備工事의 施工management에 종사하고자 하는 消防設備技士는 内務部長官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内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申告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畢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消防設備技士의 申告의 節次・申告事項의 抹消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의 13 (消防設備技士의 責務)** ① 消防設備技士는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 기타 法令에

적합하게 消防設備工事を 管理하여야 한다.

② 消防設備技士는 동시에 2 이상의 事業體에 就業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節 監督等

第42條의 14 (보고·検査등) ① 内務部長官은 消防設備工事業者 및 消防設備技士에 대하여 그 業務 또는 財產狀況등에 관한 보고, 資料提出 기타 필요한 事項을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帳簿·施設등을 調査 또는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42條의 15 (手數料)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消防設備技士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44條第1項중 “異常氣象의 警報”를 “異常氣象의 豫報 또는 特報”로 한다.

第8章의 領題 “義勇消防隊 및 請願消防員”으로 한다.

第63條第1項중 “釜山市”를 “直轄市”로 한다.

第68條에 第6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8條의 2 (請願消防員의 配置) ① 消防本部 또는 消防署長은 消防對象物의 關係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消防對象物의 關係者가 經費를 負擔할 것을 條件으로 하여 당해 消防對象物의 區域안에서 火災의 豫防·警戒 또는 鎮壓業務를 행할 者(이하 “請願消防員”이라 한다)를 配置할 것을決定할 수 있다.

② 請願消防員의 配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0條의 4第1項第1號 및 第2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免許 또는 指定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2. 防火管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施設安全員·消防設備技士 또는 請願消防員으로 選任·採用 또는 雇傭된 者

第70條의 4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는 許可·免許·指定 또는 申告를 하거나 選任·採用 또는 雇傭된 날로부터 會員이 된다.

第70條의 9第1項중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을 “内務部長官”으로 하고, “危險物施設安全員 및 消防設備技士에 대하여 年1回 7日의 범위안에서 教育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를 “危險物施設安全員·消防設備技士 및 請願消防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로 한다.

第70條의 9第2項중 “選任 또는 雇傭한 者에 대하여 防火管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取扱者·危險物施設安全員의 解任을 命하거나 消防設備技士의 解雇를 勸告할 수 있다.”를 “選任·採用 또는 雇傭한 者에 대하여 그 解任을 命하거나 解雇를 勸告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第3項을 刪除한다.

第70條의 11을 刪除하고, 第70條의 10 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하여 이를 第70條의 11로 하며, 第70條의 10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 10 (救急隊의 編成運營등) ①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불의의 災害 기타 危急한 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處置를 하지 아니하면 그 生命을 保全할 수 없는 등 危急한 患者를 醫療機關에

緊急히 移送(이하 “救急業務” 라 한다) 하기 위하여 救急隊를 編成・運營할 수 있다.

②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救急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管轄區域안의 醫療機關에 대하여 救急車의 支援・醫療要員의 派遣등의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醫療機關의 長은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急患者의 處置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救急現場에 있는 者에 대하여 救急業務에 協力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④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急業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필요한 協助을 要請할 수 있다.

⑤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救急隊의 編成・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72 條第 1 號중 “消防用水利施設”을 “消防用水施設”로 한다.

第 73 條에 第 4 號내지 第 5 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 42 條의 2 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虛偽 또는 不正한 方법으로 第 42 條의 2 第 1 項 또는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更新을 받은 者

第 73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73 條 2 (罰則) 第 5 條第 5 項 (第 5 條第 6 項・第 22 條第 3 項 또는 第 59 條에서 準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의 規定에 違反하여 檢查에 있어서 알게 된 秘密을 他人에게 漏泄한 者는 2 年이하의 戰役에 處한다.

第 74 條第 2 號중 “第 30 條第 1 項 또는 同條第 2 項”을 第 42 條의 8 第 1 項・第 42 條의 11 第 1 項・第 42 條의 12 第 1 項 또는 第 3 項”으로 한다. 同條에 第 6 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第 29 條第 3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 75 條第 1 號를 削除하고, 同條第 4 號중 “第 43 條第 2 項”을 “第 42 條의 7 第 1 項 또는 第 43 條第 2 項”으로 한다.

第 76 條에 第 5 號를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5. 第 42 條의 14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虛偽의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한 者와 정당한 事由없이 關係公務員의 出入・調查 또는 檢查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第 77 條 第 2 號중 “또는 第 17 條”를 “第 17 條 또는 第 42 條의 3”으로 하고, 同條第 3 의 2 號를 削除하여, 同條第 4 號중 “消防用水利를”을 “消防用水施設을”로 한다.

第 78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78 條 (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 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10 條第 3 項・第 15 條第 3 項・第 18 條第 5 項 또는 第 42 條의 10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泰만히 한 者

2. 第 42 條의 8 第 2 項 또는 第 42 條의 9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泰만히 한 者

3. 第 42 條의 10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道知事・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 (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 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 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 할 수 있다.

④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⑤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 30 條 내지 第 33 條, 第 42 條의 2 내지 第 42 條의 15, 第 73 條 第 4 號 및 第 5 號, 第 73 條의 2, 第 74 條第 2 號, 第 75 條第 4 號, 第 76 條第 5 號, 第 77 條第 2 號 및 第 78 條의 改正規定은 198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特殊場所의 防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스프링크라設備, 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設置된 消防對象物의 關係者는 당해 消防對象物에서 사용하는 物品에 대하여 1985年 12月 31日까지 防災處理를 하여야 한다.

第3條 (危險物의 貯藏・取扱 및 運搬에 관한 經過措置) 製造所등과 第 14 條第 1 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臨時場所에서의 危險物의 貯藏 또는 取扱과 運搬에 관하여는 第 14 條第 3 項 및 第 24 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內務部令이 制定・施行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消防設備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消防設備業의 登錄을 한 者 또는 防災處理者의 指定을 받은 者는 第 42 條의 2 第 1 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해당 各號의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工事業者는 1985年 6月 30日까지 第 42 條의 4의 改正規定에 의한 免許의 基準에 적합한 施設등을 갖추어 內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 2 項의 期限내에 同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許는 失效된 것으로 본다.

④ 內務部長官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가 免許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第 42 條의 2 第 5 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하며, 이 경우 同條第 4 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免許의 更新期間은 免許證을 交付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5條 (消防設備技士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消防設備技士로서 消防設備工事의 施工管理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第 42 條의 12의 改正規定의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內務部長官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第 78 條에 해당하는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 法 第 78 條의 規定에 의한다.

## 2. 外國 防災機關誌에 國內火災事例 揭載

當協會가 1981年부터 會員으로 加入되어 있는 英國의 防火協會(Fire Prevention Association)에서 每月 發刊하고 있는 "Fire Prevention"誌와 오랜 동안 우리 협회와 紐帶關係를 맺어오고 있는 日本의 消防設備安全센터(Fire Protection Equipment & Safty Center of Japan)의 "페스크"誌에 國內火災事例가 揭載되었다. "Fire Prevention"誌에는 '82年 12月 發生한 大邱琴湖호텔 火災와 '83年 4月 發生한 大邱 디스코텍크 火災事例가 '83年度 10月 및 11月號에, "페스크"誌에는 前記 디스코텍크 火災事例가 각각 2페이지에 걸쳐 仔細하게 紹介되었다.

同 資料는 海外 防災機關과의 相互 資料交換 協助方針 혹은 當該機關으로부터의 要請에 의해 當協會에서 作成, 送付한 것으로서 이는 外國 防災機關과의 紐帶強化와 우리 協會를 널리 알리는 데 寄與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英國의 防火協會에서는 '83年 10月 發生한 馬山市의 高麗호텔 火災事故 資料도 보내 줄 것을 要請하고 있다.